-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審 査 報 告 書

2005. 9. 14. 제243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05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9. 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우리도의 핵심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개발이 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 및 현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은 전액 출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유재산중 오창벤처임대공단(28필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4필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3필지)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

○ 현금출자액: 20,359,265천원

○ 현물출자액: 33,498,272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평가액
		151	167,651	원 33,498,172
밀레니엄타운	부지	47	100,926	14,843,763
가경・증평지	구 연부용지	95	48,634	12,153,680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	18,091	6,500,729

※ 현물출자 자산평가 방법

- 밀레니엄타운 부지 : 토지수용시 보상금액

-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 미납액

-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 택지 : 금융기관 평가액 참고 결정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 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 는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 수권 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설립자본금은 출자계획안에 의하면 현금 203억 5,926만 5천원과 현물 334억 9,817만 2천원을 합하여 총 538억 5,743만 7천원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 329조제1항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289조 제2항에 따라 설립자본금은 538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기은 이의 4배정도에 해당하는 2천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됨.8)

⁷⁾ 授權資本金은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주식총수 또는 주식금액의 총계를 말하며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수권자본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총액에 대한 주식을 회사설립시에 인수할 필요가 없고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⁸⁾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전액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을 출자하는 것임. 다만, 특별회계 자산중 밀레니엄 타운 부지내바이오 교육문화회관 건립예정지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충청북도가 조성하여 벤체기업에 임대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임대공단 부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 부지는 출자에서 제외되었으며,

구 분 금 액 며 적 비고 12,306백만원 오창벤처임대공단 부지 28,675평(28 필지) 취득가액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부지 1,963평(4필지) 1,963백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7,836평(3필지) 18,530백만원 오창센터 부지

(표 - 1) 출자제외자산 현황

-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2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미분양용지는 2개금융기관의 평가 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연부용지는 미납금액을 현물로, 밀레 니엄타운 부지는 보상가액(취득금액)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한 것 으로
-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연은 충청북도가 직접 경영 으로 조성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산을 같은 목적으로 설립 하는 지방공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출 자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금출자액을 203억 5,926만 5천원으로 확정하면서, 출자 계획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 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 현금은 전액 출자한다』라고 함으로써 추후 특별회계를 최종 결산했을 때의 현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내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또한, 현물출자 평가방법에 있어서 연부용지 미수금은 債權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을 현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와 밀레니엄타운부지 매입은 2001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평가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 어 볼 때 매입시점의 보상가액으로 평가금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 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 요지 : "생 략"
-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의 안 번 호 338

제출연월일 : 2005년 8월 2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우리도의 핵심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 및 현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은 전액 출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유재산중 오창벤처임대공단(28필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4필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3필지)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

○ 현금출자액 : 20,359,265천원

○ 현물출자액: 33,498,172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평가액(천원)
Я		151	167,651	33,498,172
밀레니엄타운	부지	47	100,926	14,843,763
가경・증평지-	구 연부용지	95	48,634	12,153,680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	18,091	6,500,729

- ※ 현물출자 자산평가 방법
 - 밀레니엄타운 부지 : 토지수용시 보상금액
 -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 미납액
 -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 택지 : 금융기관 평가액 참고 결정
- 3. 현물출자 세부내역 : 별첨1
- 4. 관계법령 : 별첨2

〈별첨1〉

○ 밀레니엄타운 부지

(단위 : m²/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액	소유자	비고
계	47필지		100,926	14,843,762,620		
1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0-1	전	2,033	251,075,500	충청북도지사	
2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1	잡	1,242	196,236,000	충청북도지사	
3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1-2	대	466	86,676,000	충청북도지사	
4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1-9	과	1,930	248,249,000	충청북도지사	
5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1-11	전	18,418	2,302,847,000	충청북도지사	
6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2-1	답	2,926	365,987,000	충청북도지사	
7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8-10	임	198	24,855,000	충청북도지사	
8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8-11	임	99	11,335,500	충청북도지사	
9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9-1	임	432	42,336,000	충청북도지사	
10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9-5	임	8,362	922,841,500	충청북도지사	
1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1	답	1,209	238,777,500	충청북도지사	
1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3	답	2,166	441,864,000	충청북도지사	
13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4	답	1,437	294,585,000	충청북도지사	
1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5	답	2,008	436,740,000	충청북도지사	
1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6	답	1,779	362,916,000	충청북도지사	
16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8-7	전	68	9,214,000	충청북도지사	
17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	답	3,610	510,815,000	충청북도지사	
18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2	답	2,387	337,760,500	충청북도지사	
1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3-1	구거	304	13,832,000	충청북도지사	
20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3-2	답	1,841	231,966,000	충청북도지사	
2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3-3	답	883	112,582,500	충청북도지사	
2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3-4	답	2,446	333,879,000	충청북도지사	
23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	답	5,831	734,706,000	충청북도지사	
2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3	전	1,542	198,147,000	충청북도지사	
2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10	과	1,125	153,000,000	충청북도지사	
26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5-8	과	264	39,732,000	충청북도지사	

27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5-9	납	1,595	346,912,500	충청북도지사	
28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5-14	대	546	119,301,000	충청북도지사	
2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6	답	1,558	327,180,000	충청북도지사	
30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7-1	답	3,516	738,360,000	충청북도지사	
3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7-2	구거	86	3,913,000	충청북도지사	
3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23-2	구거	218	9,919,000	충청북도지사	
33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23-7	답	1,302	177,723,000	충청북도지사	
3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24-2	전	530	116,600,000	충청북도지사	
3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24-4	전	905	199,100,000	충청북도지사	
36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49-5	임	1,916	235,668,000	충청북도지사	
37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89-3	과	85	10,667,500	충청북도지사	
38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90-13	과	5,551	690,039,000	충청북도지사	
39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8-1	임	2,083	253,084,500	충청북도지사	
40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8-8	임	694	87,791,000	충청북도지사	
41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산59-3	임	6,732	679,092,000	충청북도지사	
42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694	답	2,314	258,011,000	충청북도지사	
43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1-1	답	263	85,650,150	충청북도지사	
4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23-1	답	2,609	972,285,590	충청북도지사	
4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47	임	2,575	453,200,000	충청북도지사	
46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11	전	298	62,977,230	충청북도지사	
47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49-6	미	544	113,333,150	충청북도지사	

○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단위 : m²/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용 지 매	출 현 황				매 매계약자	
				공급가액①		납입금액②		미납액①-②		
				원 금	이자	원 금	이자	원 금	이자	
계	95필지		48,634.06	22,290,536,400	1,754,899,450	11,093,543,330	798,212,610	11,196,993,070	956,686,840	
소계	5필지		19,194.56	13,195,182,000	1,754,899,450	5,255,812,000	798,212,610	7,939,370,000	956,686,840	
1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7-9	대	391.90	625,307,000	75,765,980	177,307,000	25,255,530	448,000,000	50,510,450	김경숙
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5-10	대	439.40	703,104,000	85,221,910	110,734,000	28,397,660	592,370,000	56,824,250	안영식
3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86-1	대	1,760.20	756,886,000	65,923,860	643,886,000	60,880,660	113,000,000	5,043,200	권춘화,한광섭
4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3	대	3,380.76	2,938,504,000	653,639,760	562,504,000	118,030,820	2,376,000,000	535,608,940	이영남,박익규, 전영자
5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잡	13,222.30	8,171,381,000	874,347,940	3,761,381,000	565,647,940	4,410,000,000	308,700,000	청주시장
소계	90필지		29,439.50	9,095,354,400	-	5,837,731,330	_	3,257,623,070	-	
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5-8	대	232.80	65,080,300		55,318,230		9,762,070		권혜석
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4-2	대	234.10	83,970,100		65,076,760		18,893,340		김권호
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7-14	대	282.40	59,790,200		46,337,360		13,452,840		김문식
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6-2	대	268.20							
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6-3	대	267.40	122,205,700		80,963,130		41,242,570		김미연
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5-6	대	245.00	67,861,400		52,592,540		15,268,860		김병준
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613-3	대	530.20	183,640,200		101,002,020		82,638,180		김성필
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4-3	대	479.60	156,995,300		86,347,330		70,647,970		김순갑
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49-8	대	381.20	76,790,400		42,234,880		34,555,520		김연희
1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3-3	대	631.80	330,193,600		62,736,780		267,456,820		김영숙
1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5-4	대	239.60							
1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13	대	227.80	137,479,600		83,348,430		54, 131, 170		김영일
1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9	대	220.20							
1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0-3	대	425.70	94,067,600		72,902,390		21,165,210		김영일
1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49-4	대	254.80	52,244,400		44,453,600		7,790,800		김왕년
1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603-4	대	210.10	45,562,400		25,059,320		20,503,080		김은숙
1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8-5	대	299.30	61,830,200		47,918,360		13,911,840		김은희
1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9-8	대	246.70	67,444,800		57,444,800		10,000,000		김주석

4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0-9	대	338.00	92,057,800	71,344,750	20,713,050	연신흠
5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42-6	대	536.50	225,247,400	165,247,400	60,000,000	연철흠
5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4-4	대	427.20	104,936,600	69,520,460	35,416,140	연철흠
5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1-1	대	271.20	93,375,400	86,372,190	7,003,210	연흠정
5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3-4	대	234.10	63,759,500	49,413,590	14,345,910	강문희, 강희웅
5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7-4	대	315.80	111,327,900	67,492,500	43,835,400	유옥상
5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2	대	289.10	101,024,100	51,017,130	50,006,970	유완재
5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3	대	328.50	114,792,200	57,969,980	56,822,220	유완재
5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3-5	대	290.30	67,877,600	52,605,140	15,272,460	윤재민
5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1	대	295.60	121,676,000	61,446,380	60,229,620	윤혜경
5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9-12	대	506.90	204,744,800	149,463,620	55,281,180	이규준
6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3	대	244.20				
6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12	대	227.90	95,829,400	59,893,340	35,936,060	이기원
6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11	대	229.20				이두수 한은복
6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10	대	229.70	97,630,600	68,341,380	29,289,220	한은복 -
6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2-1	대	331.60	74,807,800	63,586,580	11,221,220	오상근
6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9-4	대	481.50	109,861,900	66,603,760	43,258,140	이복순
6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4	대	320.20	111,891,800	56,505,350	55,386,450	이상봉
6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1-4	대	297.60	110,570,500	55,838,080	54,732,420	이상봉
6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6-4	대	315.10	96,993,600	75,170,040	21,823,560	이상훈
6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9-2	대	329.80	77,113,400	59,762,840	17,350,560	이숙예
7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8-7	대	482.40	139,071,500	92,134,850	46,936,650	이영자
7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9-5	대	265.00	114,598,700			이원재,
7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9-6	대	264.70	111,000,700	95,260,080	19,338,620	이원용
7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2-2	대	539.60	303,082,000	139,417,720	163,664,280	이용직
7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8-3	대	374.60	113,576,300	68,855,570	44,720,730	이은희
7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8-6	대	374.50	113,546,000	68,837,240	44,708,760	이은희
7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3-3	대	233.90	63,705,100	49,371,430	14,333,670	이재순
7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9-5	대	350.30	86,587,100	80,093,040	6,494,060	이정의
7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1-5	대	308.10	132,996,100	88,109,910	44,886,190	이정호

							,
1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8-6	대	474.30	183,290,100	100,809,510	82,480,590	노수영
2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7-5	대	365.50	136,361,600	121,020,920	15,340,680	박남옥
2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48-8	대	280.10	56,424,400	43,818,270	12,606,130	박병예
2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7-2	대	353.20	114,348,200	88,619,780	25,728,420	박병준
2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6-3	대	177.20	37,699,200	29,216,880	8,482,320	박용권
2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5-7	대	246.60	68,304,600	58,058,860	10,245,740	박이순
2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38-2	대	442.60	81,653,300	63,653,300	18,000,000	박정규
2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612-4	대	450.00	151,237,100	127,835,100	23,402,000	박희동
2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9-6	대	412.20	134,932,100	96,982,440	37,949,660	배상흠
2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9-9	대	330.30	110,329,000	98,037,840	12,291,160	변상건
2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3-6	대	296.40	62,145,000	48,162,330	13,982,670	변재석
3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3-5	대	237.30	64,631,100	45,241,750	19,389,350	변종호
3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1-7	대	337.90	92,030,500	71,323,570	20,706,930	서명자외 I
3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0-3	대	386.10				
3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0-5	대	153.00	116,149,500	63,882,150	52,267,350	성경호
3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4	대	244.50				
3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5	대	244.60	99,280,100	47,158,010	52,122,090	성남숙
3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10	대	227.80				
3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4-11	대	227.90	92,500,500	43,937,700	48,562,800	성남숙
3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7-5	대	315.70	109,508,100	68,442,550	41,065,550	송영이
3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612-3	대	452.10	151,942,800	90,405,900	61,536,900	신성교
4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5-2	대	327.60	94,444,100	73,194,110	21,249,990	신정덕
4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5-6	대	239.70	54, 198, 600	46,068,760	8, 129, 840	신진홍
4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34-11	대	255.80	52,318,000	44,470,300	7,847,700	안대관
4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34-10	대	255.90	52,338,500	44,487,650	7,850,850	안대형
4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7-1	대	353.70	141,047,300	117,245,560	23,801,740	안재형
4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92-4	대	479.00	153,845,100	91,745,100	62,100,000	연광영
4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9-8	대	330.20	110,295,600	91,680,120	18,615,480	연규성
4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7	대	366.60	140,539,800	110,058,530	30,481,270	연규숙
4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1-4	대	288.90	115,206,600	95,855,330	19,351,270	연순자

7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8-4	대	299.10	61,788,900	47,886,330	13,902,570	이현정
8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37-11	퓹	186.20	51,574,600	47,706,450	3,868,150	이혜숙
8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4-8	ፐ	264.20	59,059,500	45,771,090	13,288,410	장정상
82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4-5	끄	491.30	271,660,900	100,514,530	171,146,370	전동수
8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604-2	뀸	273.30	62,498,200	48,436,060	14,062,140	정복교
8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83-4	퓹	448.60	232,143,600	44,107,280	188,036,320	정성순
8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70-8	퓹	222.50	50,195,200	42,665,920	7,529,280	정수길외1
8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611-2	댸	347.70	116,141,100	83,596,910	32,544,190	정순자
8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4-6	퓹	563.00	320,565,100	161,885,290	158,679,810	정종석
8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56-3	퓹	394.90	113,643,100	68,896,090	44,747,010	김영미, 노정숙
8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65-15	대	404.20	174,479,200	95,963,520	78,515,680	최웅식
90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548-7	뀹	281.80	56,766,900	35,479,260	21,287,640	황현수

○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 택지

(단위 : m²/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액	소유자	비고
계			18,091.9	6,500,729,500		
1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56	공장	9,763.1	927,485,000	충청북도지사	부용산업단지
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75-1	대	1,827.3	1,280,920,000	충청북도지사	가경지구
3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37	대	1,972.2	3,254,150,000	충청북도지사	가경지구
4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78-1	잡	963.4	117,121,000	충청북도지사	증평지구
5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62-4	잡	555.1	153,765,000	충청북도지사	증평지구
6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82-1	잡	584.5	161,675,000	충청북도지사	증평지구
7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606-1	잡	1,027.1	124,761,500	충청북도지사	증평지구
8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87-1	대	749.0	269,820,000	충청북도지사	증평지구
9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87-2	대	650.2	211,032,000	충청북도지사	증평지구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지방재정법

제15조(출자의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2(현물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 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출자가액)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의 가액을 결정할때에는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재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광업권·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규정이 없는 것은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평가를 참작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요청한 기일 내에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